**2022년 3월 24일자 통합이사회의 결의 - RDC 제646호**

**(2022년 3월 30일 연방관보 제61호에 고시)**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및 향수의 라벨링에 포르투갈어로 성분을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다.

**국가보건규제청의 통합이사회는** 1999년 1월 26일자 법률 제9,782호의 제7조 III과 제15조 III 및 IV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또한 2021년 12월 10일 통합이사회 결의 - RDC 제585호에 의해 승인된 내부 규정 제187조, VI, §1 및 §3의 규정을 고려하여, 2022년 3월 23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다음 결의를 채택하기로 의결하며, 이사회 의장인 본인은 이의 고시를 결정한다.

제2조.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및 향수는 포르투갈어로 된 화학성분을 라벨링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다음에 규정하는 두 가지의 다른 요구 사항의 효력을 침해하지 않는다.

§1º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에 의한 명명법은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및 향수의 라벨링에 계속적인 의무사항이다.

§2º 라벨이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전체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벨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중심부 및 재료의 무결성이 보장되는 한, 포르투갈어로 된 화학성분을 보완 라벨 위의 제품 원래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3º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화학성분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 라벨의 상수 코드를 판독하는 디지털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모바일 장치는 성분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하고, 코드 앞에 "Composição” (성분, 포르투갈어)" 또는 "Ingredientes”(재료, 포르투갈어)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제3조. 제2조의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라질 공통 명칭(DCB) 또는 Anvisa가 지정하는 다른 문헌에도 이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단일 문구. 해당 물질이 브라질 공통 명칭(DCB) 또는 Anvisa가 지정하는 다른 참조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는 포르투갈어로 인정된 번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2012년 12월 28일자 통합이사회 결의 - RDC 제63호 및 해당 업데이트에 의해 수립된 규칙에 따라 국제화장품성분 명명법 (INCI)을 번역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다.

제4조. 본 결의의 유효기간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각각의 유효기간까지 판매될 수 있다.

제5조 두 개의 규정 적용(regularization)된 제품이 본 표준을 포괄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도되는 경우, 그 제품들은 제품의 라벨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변경을 요청 받지 않는다.

제6조. 본 결의에 포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1977년 8월 20일자 법률 제6,437호의 조항에 따라 위생에 관한 위반을 구성하며, 이는 적용 가능한 민사, 행정 및 형사적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7조. Ficam은 다음 규정을 폐지한다.

I – 통합이사회결의 - 2020년 11월 4일자 RDC 제432호

II - 통합이사회결의 - 2021년 5월 27일자 RDC 제499호

제8조. 본 결의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토니우 바라 토레스**